의 안 번 호

1484

【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8.(목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1. 9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1. 30.(금)

2. 제안이유

예산의 불법 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 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정의,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예산절감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근거법규

가.「지방재정법」제48조의2

나.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54조의2

5. 검토의견

본 제정 조례안은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의 불법 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신고체계를 구체화하고,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